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개정 안내 (21.1.14. 적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른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2021. 1. 14)

- 아 래 -

○ 시행일 : 2021년 1월 14일

○ 개정 사항

-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반영하여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상병기호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별첨 3)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M518, M519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G905 ,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M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8,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S000~S001, S003 , S004 , S005 , S008 , S009 , S030, S034~S035, S091, S108	80%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S109,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S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1~T935, T938~T939		

※ 개정 상병기호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별첨3)
상병기호	상병명	
G90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교감신경반사디스트로피	코드 추가
S003	코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0034 → S003)
S004	귀의 표재성 손상 귀길의 표재성 손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0044 → S004)
S005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0054 → S005)
S008	볼의 표재성 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0084 → S008)
S009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0094 → S009)
S108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1084 → S108)
S109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코드 삭제 및 변경 (S1094 → S109)

- 특수(탈구)추나 요양급여 대상 상병기호 개정

개정 전	현행	비고
M220, M2430, M2431, M2432, M2433, M2434, M2435, M2436, M2437, M2438, M2439, M2440, M2441, M2442, M2443, M2444, M2445, M2446, M2447, M2448, M2449, S030, S4300, S4301, S4302, S4308, S4309, S431, S432, S433, S530, S5310, S5311, S5312, S5313, S5318, S5319, S6300, S6301, S6302, S6303, S6308, S6309, S6310, S6311, S6319, S632, S7300, S7301, S7308, S7309, S830, S8310, S8311, S8312, S8313, S8318, S8319, S930, S9310, S9311, S9319, S9330, S9331, S9332, S9333, S9338, S9339, T030, T031, T032, T033, T034, T038, T039, T092, T112, T132, T143	M220, M2430, M2431, M2432, M2433, M2434, M2435, M2436, M2437, M2438, M2439, M2440, M2441, M2442, M2443, M2444, M2445, M2446, M2447, M2448, M2449, S030, S4300, S4301, S4302, S4308, S4309, S431, S432, S433, S530, S531, S6300, S6301, S6302, S6303, S6308, S6309, S6310, S6311, S6319, S632, S730, S830, S831, S930, S9310, S9311, S9319, S9330, S9331, S9332, S9333, S9338, S9339, T030, T031, T032, T033, T034, T038, T039, T092, T112, T132, T143	코드 삭제 및 변경 (S5310~3, S5318~9 → S531) (S7300~1, S7308~9 → S730) (S8310~3, S8318~9 → S831)

첨부 : 개정 고시 및 붙임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02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의 [별첨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을 아래와 같이 한다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M518, M519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G905,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8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M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8,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S000~S001, S003, S004, S005, S008, S009,
S030, S034~S035, S091,
S108, S109,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S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1~T935, T938~T939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M518, M519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M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80%	

(별첨 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M518, M519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G905 ,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M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80%	

G905 (코드추가)

<p>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8,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u>S000~S001, S0034, S0044, S0054, S0084, S0094,</u> S030, S034~S035, S091, <u>S1084, S1094,</u>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S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p>			<p>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8,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S000~S001, <u>S003, S004, S005, S008, S009,</u> S030, S034~S035, S091, <u>S108, S109,</u>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S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p>			<p>S0034→S003 (코드삭제 및 변경) S0044→S004 (코드삭제 및 변경) S0054→S005 (코드삭제 및 변경) S0084→S008 (코드삭제 및 변경) S0094→S009 (코드삭제 및 변경)</p>
--	--	--	---	--	--	--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1~T935, T938~T939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1~T935, T938~T939			S1084→S108 (코드삭제 및 변경) S1094→S109 (코드삭제 및 변경)
---	--	--	---	--	--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관련, 2019.4.8.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관련, 2019.4.8.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5호 관련, 2019.4.8.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00호 관련, 0000.0.0.적용)

1 적용시기

연번	질의 및 답변
1	<p>추나요법은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p> <p>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2019년 4월 7일부로 종료됩니다.</p>
2	<p>2019년 4월 8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도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p> <p>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입원하였다더라도 입원일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일 이후 실시된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됩니다.</p>

2 추나요법

연번	질의 및 답변
3	<p>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산정하나요?</p> <p>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복잡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합니다.</p>
4	<p>추나요법은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날 경추, 요추 두 부위에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2회 산정</p>

연번	질의 및 답변
	<p>가능한가요?</p> <p>추나요법은 여러 부위에 실시하여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p>
5	<p>동일 날 타상병으로 추나요법을 2회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요?</p> <p>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p>
6	<p>동일 날 A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에게 B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p> <p>추나요법은 요양기관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B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추나요법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추나요법 기 실시횟수를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7	<p>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일 날 실시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p> <p>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일 날 실시하더라도 한 가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1]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를 실시한 경우 → '복잡추나' 산정 [예시2] 단순추나와 특수(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 → '특수(탈구)추나' 산정</p>
8	<p>단순추나인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모두 실시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p> <p>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모두 실시하여도 '단순추나'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p>
9	<p>추나요법은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되나요?</p> <p>추나요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첨 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이하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명시된 질환에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됩니다. 이 외 질환에 대해 실시한 추나요법은 비급여입니다.</p>
10	<p>추나요법은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이 주상병인 경우에만 급여 적용되나요?</p> <p>추나요법은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급여 적용됩니다.</p>

연번	질의 및 답변
11	<p>특수(탈구)추나는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나요?</p> <p>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있으나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며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입니다.</p>
12	<p>특수(탈구)추나는 모든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p> <p>특수(탈구)추나는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중 아래에 명시된 상병에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탈구상병></p> <p>M220, M2430, M2431, M2432, M2433, M2434, M2435, M2436, M2437, M2438, M2439, M2440, M2441, M2442, M2443, M2444, M2445, M2446, M2447, M2448, M2449, S030, S4300, S4301, S4302, S4308, S4309, S431, S432, S433, S530, S531, S6300, S6301, S6302, S6303, S6308, S6309, S6310, S6311, S6319, S632, S730, S830, S831, S930, S9310, S9311, S9319, S9330, S9331, S9332, S9333, S9338, S9339, T030, T031, T032, T033, T034, T038, T039, T092, T112, T132, T143</p> </div>
13	<p>견인장치를 활용한 견인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있나요?</p> <p>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p>
14	<p>추나요법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p> <p>추나요법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야간·공휴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3 본인부담

연번	질의 및 답변																									
15	<p>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p> <p>건강보험 자격자의 경우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는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를 적용하며, 복잡추나는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 또는 8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 2종 모두 80%)를 적용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th> <th colspan="2">복잡추나</th> </tr> <tr> <th>추간관장애, 척추협착</th> <th>그 외 질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건강보험</td> <td>일반</td> <td>50%</td> <td>50%</td> <td rowspan="4">80%</td> </tr> <tr> <td rowspan="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td> <td>9)</td> <td>30%</td> <td>30%</td> </tr> <tr> <td>10)</td> <td>40%</td> <td>40%</td> </tr> <tr> <td rowspan="2">의료급여</td> <td>1종</td> <td>30%</td> <td>30%</td> </tr> <tr> <td>2종</td> <td>40%</td> <td>40%</td> </tr> </tbody> </table>	구분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	복잡추나		추간관장애, 척추협착	그 외 질환	건강보험	일반	50%	50%	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9)	30%	30%	10)	40%	40%	의료급여	1종	30%	30%	2종	40%	40%
구분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			복잡추나																						
		추간관장애, 척추협착	그 외 질환																							
건강보험	일반	50%	50%	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9)	30%		30%																					
10)		40%	40%																							
의료급여	1종	30%	30%																							
	2종	40%	40%																							
16	<p>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이 50%인 경우, 그 외 진료행위(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도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나요?</p> <p>추나요법만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며, 그 외 진료행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p>																									
17	<p>추나요법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추나요법이 비급여인 경우, 그 외 진료행위(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도 비급여인가요?</p> <p>추나요법만 비급여이며, 그 외 진료행위는 현행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p>																									

연번	질의 및 답변
18	<p>추나요법은 중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적용하나요?</p> <p>추나요법은 중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적용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추간판장애에 복잡추나를 실시한 경우에도 복잡추나 비용은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p>
19	<p>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환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추나요법을 실시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p> <p>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환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추나요법을 실시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 및 제3호거목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산정합니다.</p> <p>[예시] 복잡추나(본인부담률 50%)만 실시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초진진찰료와 복잡추나 비용을 더하면 49,030원입니다. (초진진찰료 12,890원 + 복잡추나 36,145원 = 49,030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므로 초진진찰료의 30%와 복잡추나의 50%를 더한 21,900원입니다. (3,867원(12,890원×30%) + 18,072.5원(36,145원×50%)) = 21,939.5원(100원미만 절사)</p>
20	<p>복잡추나의 경우 수가코드가 2개(40720, 40721)인데 각각 언제 산정하나요?</p> <p>복잡추나는 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40720'은 본인부담률이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인 경우에 산정하며, '40721'은 본인부담률이 80%인 경우에 산정합니다.</p>
21	<p>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나요?</p> <p>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22	<p>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각종 지원금(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p> <p>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각종 지원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4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이수

연번	질의 및 답변
23	<p>'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 해야 하나요?</p> <p>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심평원에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는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19.3.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일괄 신고하였으나 급여 청구 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조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9.4.1일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4.8일부터 개별 신고 가능합니다.</p>
24	<p>'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이수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p> <p>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교육 이수 신고 및 확인 관련 상세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25	<p>추나요법 급여는 교육 이수일과 신고일 중 어느 날부터 적용되나요?</p> <p>추나요법 급여는 교육 이수일부터 적용됩니다.</p>

5 실시인원 제한

연번	질의 및 답변
26	<p>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p> <p>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27	<p>1일 18명은 건강보험 환자만 해당되나요?</p> <p>1일 18명에는 건강보험 환자 이외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됩니다.</p>

6 수진자 횡수 제한

연번	질의 및 답변
28	<p>추나요법 '연간 20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p> <p>'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를 의미합니다. 다만, 2019년은 급여 적용일부터 12.31.까지 20회 급여 적용됩니다.</p>
29	<p>급여 적용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횡수도 '연간 20회'에 포함되나요?</p> <p>추나요법 급여 적용일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횡수는 '연간 20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30	<p>'연간 20회'에서 횡수는 건강보험 자격일 때만 해당되나요?</p> <p>'연간 20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됨을 의미합니다.</p>
31	<p>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 받았습니.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다시 20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p> <p>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 횡수인 5회만 급여 적용됩니다.</p>
32	<p>추나요법은 유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별로 각각 20회까지 급여 적용되나요?</p> <p>추나요법은 유형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p>
33	<p>요통 상병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 받았습니. 이후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다시 20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p> <p>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잔여횡수인 5회만 급여 적용됩니다.</p>

7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연번	질의 및 답변
34	<p>'추나요법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p> <p>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 할 경우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실시횡수 (타 요양기관 포함)를 조회·관리하고 실시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해당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됩니다.</p>
35	<p>추나요법은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되는데 환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횡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p> <p>'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서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횡수를 포함한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실시횡수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당 연 20회를 초과한 경우 비급여이므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추나요법 기 실시횡수를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p>
36	<p>추나요법 실시횡수 조회 시 환자의 동의없이 주민번호(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한가요?</p> <p>「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1절제15조에 의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양기관은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37	<p>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언제 전송해야 하나요?</p> <p>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진료 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추나요법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전송 가능합니다.</p>
38	<p>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20번째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로 적용하였으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하니 타 요양기관에서 20번째를 이미 등록하여 '추나요법 실시 횡수가 연 20회 초과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p> <p>추나요법은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연 20회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다른 요양기관이 20번째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먼저 전송한 경우 이후 전송된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p>

연번	질의 및 답변
39	<p>‘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전송하였으나 상병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p> <p>변경된 상병이 ‘추나요법 급여 질환’인 경우 변경된 상병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송한 진료정보의 상병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p>
40	<p>‘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 시 보험자가 의료급여(혹은 보훈)이었으나 건강보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p> <p>보험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중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자로 청구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송한 진료정보의 보험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p>
41	<p>‘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 시 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이었으나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p> <p>보험자가 자동차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변경된 진료정보로 재전송하여야 합니다.</p>
42	<p>‘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잘못된 진료정보 전송되었습니다. 삭제 가능한가요?</p> <p>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진료정보는 자료 전송일 ‘당일’에만 삭제 가능합니다.</p>

[붙임]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교육 이수 한의사 신고 및 확인 방법 안내

- | | |
|-------------------------|-----|
| 1. 교육 이수 신고 방법 | 10p |
| 2. 교육 이수 신고 확인 방법 | 13p |

1. 교육 이수 신고 방법

-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의료법인립의료재단길병원 (31100309) 로그아웃 2016-01-18 17:00:33

서면신고전행조회 마이: 0.0.0.0.0.1

서비스안내	개설	현황신고·변경	휴·폐업	외부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통계	사용
관할지자체 신고(허가)	심사평가원 신고	인력	장비신고	식대·차등제	난입시술 의료기관 평가		
변경신고 목록(지자체)	변경신고 목록(심평원)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신고	장비현황 신고목록	입원환자서	자료제출		
의료기관(기본·대표자·진료과목·시설) 변경신고	요양기관 주<->공동개설지 변경신고	인력신고목록조회	진방장치 인력신고	치료석 영양관리료			
의료기관(기본·대표자·진료과목·시설) 변경신고 임시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등 변경신고	대진의 신고안내	진방장치 현황신고	차등제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등) 신고	시설현황 신고목록 조회	의(약/조산)사 신고	특수장비 인력신고 목록	특수운영현황			
응급의료기관신고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신고	의료기사 신고	특수장비 현황신고				
	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신고 임시	간호인력 신고	일반장비 현황신고				
	차등제운영명상현황 신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고	비코드 재발급 신청				
	요양병원 일반입원실 6인이상 명상현황 신고	동위원소 취급인력 신고	비코드 재발급 진행현황 조회				
		의료인력 건강보험자격 연계결과	의료장비 출납정보 조회				

개설
법·의원 및 약국개설, 지급계좌신고 등

현황신고·변경
기본현황, 시설·인력·장비·특수운영현황, 식대·차등제신고 등

휴·폐업
법·의원 및 약국 휴·폐업 신고

외부기관정보
외부기관정보, 외

2) 의(약/조산)사 현황 목록에서 “변경”클릭하거나 “신규입사”클릭

의(약/조산)사 현황

의(약/조산)사현황 최종제출 - 의(약/조산)사 신고내 증명자설 전담의(휴가) 등록 의료인력 현황수 현황 신고 바로그기 인력 사전 점검업무안내GUIDE

면허종별 -- 면허번호 의료연성명 회사자포함 조회

목록경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의(약/조산)사 현황 레지던트->전문의신고 일괄회사 액셀저장 면허자격발저장 총: 130건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항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무항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 이력조회	인력현황변경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14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6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기타		2014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18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신고대상목록 총액 신규입사 액셀저장 액셀서식저장 액셀업로드 전체삭제 총: 0건

구분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항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무항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력신고 변경
	변경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상근		2009	수정 신고취소

3) “자격등록”탭 선택 후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에서 “교육/경력추가” 클릭

- 3-1) 교육이수종별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선택
- 3-2) 자격조회 : 조회대상 아님
- 3-3) 교육이수번호 : 미입력
- 3-4) 인정일자 : “교육이수일자” 입력

의(약/조산)사 자격등록

의(약/조산)사현황 최종제출 - 의(약/조산)사 신고내 증명자설 전담의(휴가) 등록 의료인력 현황수 현황 신고 바로그기 인력 사전 점검업무안내GUIDE

전달사항등록 자제해독스번호확인

구비서류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 일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명을 "요양기호_붙임일내용"으로 제출합니다.

파일명	상태

전달사항 * 다운로드 형식을 선택하세요. [원문] [대문] [소문] [파일추가]

*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작성사항정보등록

+ 신고자 *전화번호 없음 -- --

e-mail @ 선택

최종제출 목록

주요내용안내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 - 보행스 등의 교육이수는 120시간 이상시 신고가능합니다. 교육/경력추가 교육/경력삭제 전체삭제 총: 1건

구분	교육이수종별	자격조회	교육이수번호	인정일자
신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자격조회		2019-02-25

4) 자격등록 탭 오른쪽 하단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의(약/조산)사 현황

의(약/조산)사현황 최종제출 - 의(약/조산)사 신고내 증명자설 전담의(휴가) 등록 의료인력 현황수 현황 신고 바로그기 인력 사전 점검업무안내GUIDE

면허종별 -- 면허번호 의료연성명 회사자포함 조회

목록경신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고침**을 눌러주세요.

의(약/조산)사 현황 레지던트->전문의신고 일괄회사 액셀저장 면허자격발저장 총: 130건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항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무항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 이력조회	인력현황변경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14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6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기타		2014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18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퇴사신청	

신고대상목록 총액 신규입사 액셀저장 액셀서식저장 액셀업로드 전체삭제 총: 0건

구분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항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무항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력신고 변경
	변경	한 의사	봉직 의사	전문의		상근		2009	수정 신고취소

5)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후 파일첨부(교육 이수증) 후 “최종제출” 클릭

의(약/조산)사 자격등록

의(약/조산)사현황 최종제출 - 의(약/조산)사 신고내 증명자설 전담의(휴가) 등록 의료인력 현황수 현황 신고 바로그기 인력 사전 점검업무안내GUIDE

전달사항등록 자제해독스번호확인

구비서류 팩스 우편 방문 파일첨부

* 일부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명을 "요양기호_붙임일내용"으로 제출합니다.

파일명	상태

전달사항 * 다운로드 형식을 선택하세요. [원문] [대문] [소문] [파일추가]

*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작성사항정보등록

+ 신고자 *전화번호 없음 -- --

e-mail @ 선택

최종제출 목록

주요내용안내

2. 교육이수 신고 신고 확인 방법

-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 신고

The screenshot shows the HURB portal homepage with various service categories. The '현황신고·변경' (Current Report/Change) tab is highlighted.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grid of service categories. The '인력' (Personnel) category is highlighted, and within it, '의(약/조산)사 신고' (Medical/Pharmaceutical/Obstetrician Report) is selected.

- 2) 심평원에서 인력 신고 처리 중(미반영)인 경우 인력신고목록조회 화면이 보여짐

The screenshot shows the '인력신고목록조회' (Personnel Report List Search) screen.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의(약/조산)사 신고' (Medical/Pharmaceutical/Obstetrician Report) for the period 2018-08-25 to 2019-02-25. The search results table shows a single entry for '한반병원' (Hanbwan Hospital) with a status of '(심평원)처리중' (Being processed by HIRA).

접수번호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민원유형	접수일시	처리상태	접수확인	재작성인원
2019005000033	111	한반병원	의(약/조산)사 신고	2019-02-25 21:28:39	(심평원)처리중	접수내역	환수

- 3) 심평원 인력 신고 완료(반영) 시 의(약/조사)사 신고화면이 보여짐

The screenshot shows the '의(약/조산)사 신고' (Medical/Pharmaceutical/Obstetrician Report) screen. The '의(약/조산)사 현황' (Medical/Pharmaceutical/Obstetrician Status) tab is selected. The table shows a list of reports, with the most recent one for '한반병원' (Hanbwan Hospital) highlighted in green, indicating it has been processed.

면허종별	의사구분	의사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형태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입사 이력조회	인력현황변경
<input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14	이력조회	변경
<input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6	이력조회	변경
<input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기타		2014	이력조회	변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18	이력조회	변경
<input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input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input type="checkbox"/>	한 의사	보통 의사	전문의	고	상근		2002	이력조회	변경

- 4) 인력 신고 반영(교육이수 등록) 내역 확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 신고 > 변경 > 자격등록 탭 클릭
- >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의(약/조산)사 정보변경' (Medical/Pharmaceutical/Obstetrician Information Change) screen. The '자격등록' (License Registration) tab is selected. The '의(약/조산)사 자격 신고항목' (Medical/Pharmaceutical/Obstetrician License Report Item) table shows a single entry for '없음' (None) with a status of '처리완료' (Completed).

대표	구분	자격종별	자격조회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전공차수	시작일자	종료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한방내과	자격조회		2002-	--	2014	9999-12-31

The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 (Education/Experience Information Report Item) table shows a single entry for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Chuna-yeobbeon Gyeopjeon Sa-jongyeok) with a status of '처리완료' (Completed).

구분	교육/경력종별	자격조회	교육/경력번호	인정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자격조회	2019-02-25